

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를 삭제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친절·공정)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,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, 모든 업무를 친절하고 신속·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.

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

제7조의 제목“(법령준수)”를“(근무기강의 확립)”으로 한다.

제13조 단서 “다만,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.”를 “다만,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.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봉사) ① 공무원은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·사를 분별하고 민주적이며, 공정하게,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공무원은 주권자인 주민의 수임자로서 항상 주민의 신임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p>	<p><삭제></p>
<p>제5조(친절) 공무원은 모든 업무를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여 친절하며, 신속·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.</p>	<p>제5조(친절·공정) ① 공무원은 공과사를 명백히 분별하고,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, 모든 업무를 친절하고 신속·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</p>
<p>제7조(법령준수) 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,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율을 준수하여야 한다.</p>	<p>제7조(근무기강의 확립) ①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②</p> <p>.....</p>
<p>제13조(근무시간)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. 다만, 토요일의 근무시간은 13시로 한다.</p>	<p>제 13조(근무시간) 토</p> <p>..... 토</p> <p>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.</p>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